

일본에서 람사협약 등록조건은?

일본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습지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1.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이어야 한다.(국제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2. 국가 법률(자연공원법, 급수보호법등)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자연환경의 보전을 꾀할것.
3.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을것.

국제기준

- 기준1 특정의 생물 지리학적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상태의 습지
- 기준2 희귀 취약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종 또는 아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들종의 개체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
- 기준3 동식물종의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이 유전적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
- 기준4 생물순환체계로 보아 위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식물 서식지로서의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
- 기준5 20,000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기준6 어느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전체가 전체 서식수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습지
- 기준7 지역고유의 동식물 종 또는개체군이 있음으로써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습지
- 기준8 주요 하천 또는 연안 유역으로 수문학적 생물학적 및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적 기능 역할을 하는 대표적 습지로 특히 국경부근에 위치한 것은 이군에 속함
- 기준9 습지의 가치 생산성 및 다양성을 나타내는 특정 물새 분류군에 속하는 개체수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여기서 말하는 어류란 물고기 외에 새우, 게, 조개류를 포함합니다.

국가법률

신지코·나카우미는 국가지정급수보호구 특별보호지구로 지정되어, 2005년 11월 동시에 람사협약습지에 등록되었습니다. 특별보호지구는 크게 세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1. 매립지 또는 간척지
2. 대나무, 수목의 벌채
3. 토목·건축물 등의 설치

~로고의 변천으로 보는 람사협약의 역사~

람사협약을 물새보호조약으로 보는 면이 많지만, 그 성격은 3년에 1번씩 개최되는 협약체결국회의(COP)의 수많은 결의와 권고를 통해 바뀝니다. 현재는 물새뿐만 아니라 어패류를 비롯한 습지가 가지고 있는 폭넓은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협약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전에는 「비악하는 물새」가 이미지화 되었고, 1999년 부터는 「물의 흐름과 생명」을 이미지화하는 새로운 로고로 변경되었습니다.



1999년이전

1999년이후



1993년 COP5
일본·구시로(釧路)



1996년 COP6
오스트리아·브리즈넨



1999년 COP7
코스타리카·산호세



2002년 COP8
스페인·발렌시아



2005년 COP9
아프리카·우간다

또 1993년에 일본 구시로(釧路)에서 개최된 COP5이후, COP로고가 작성되었는데 그 변천사를 보면 비악하는 물새에 어류와 물풀이 표현됩니다. 신지코·나카우미가 등록된 COP9에서는 마침내 구체적인 동식물의 이미지가 없어지고 「습지와 물이 모든 생명체를 길러내고 생활환경을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이릅니다.